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71
----------	------

제출년월일 : 2019.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 이유

예술감독의 선임·직무 및 활동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관부서장인 대구문화예술회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감 부여

2. 주요 내용

- 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예술감독 선임 외에 활동지원 보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예술감독 선임 및 활동지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 조정(안 제3조제3호)
- 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외에 대구문화예술회관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 다. 위원회의 연임횟수를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 조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라. 위원의 기피 규정을 명확화하여 기피신청 자격자를 안건의 이해관계자로 명시하고, 기피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 마. 예술감독의 선임과 직무 및 활동지원 보상금에 관하여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4조제2항·제4항, 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9조

다. 예산 조치 :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되었음

라. 기타 사항

1)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 3건 반영

- 제3조제3호의 당초 개정안의 ‘예술감독 선임 등’ 규정이 불명확성 및 과도한 재량권 행사 소지가 있어 ‘예술감독 선임 및 활동지원 보상금 지급’으로 수정
- 제4조제3항에 위원회 연임횟수 제한규정이 없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조항을 따른다는 당초 개정안이 오히려 현행 규정보다 불명확하여 제7조제2항을 ‘위원에게 ... 경우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로 수정

4) 입법 예고

가) 예고 기간 : 2019. 2. 28. - 3. 20.

나) 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사진비엔날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진예술”을 “사진 예술”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선임”을 “선임 및 활동지원 보상공금 지급”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위원”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문화예술회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서장”을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을 “위원에게”로,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를 “경우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예술감독의 선임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감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엔날레 주제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2. 전시장 구성 등 대구사진비엔날레의 행사 구성 및 진행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예술감독에게 활동지원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u>사진예술</u>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대구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2. (생략)</p> <p>3. 예술감독 <u>선임</u>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u>문화체육관광국장</u>을 당연직위원으로 둔다.</p> <p>1. 문화예술계의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u></p>	<p>제1조(목적) ----- ----- ----- ----- <u>사진 예술</u> ----- -----.</p> <p>제3조(대구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의 설치)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선임 및 활동지원 보상금 지급</u>-----</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문화체육관광국장 및 문화예술회관장을 당연직 위원</u>-----.</p> <p>1. ----- <u>사람</u>-----</p>

2. 경제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학계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구사진비엔날레 운영기관의 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생략)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2. -----

-- 사람

③ -----
-----,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

④ -----

----- 소
관부서장-----

-----.

제6조(위원의 해촉) -----

----- 해촉할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에게 -----
----- 경우 안
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
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예술감독의 선임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감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엔날레 주제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2. 전시장 구성 등 대구사진비엔날레의 행사 구성 및 진행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예술감독에게 활동지원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생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붙임 2)

대구사진비엔날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예술감독에 대한 활동보상 지원금 지급(안 제10조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예술감독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비의 예상 비용은 6,000만원 이하로서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장 박희준